2023년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3. 7. 18.(화요일), 10:30
- o 장 소: 대면 심의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58건(안건번호 제2023-94401호~9585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94401호~94402호는 ■■■ 카페에서 더빙 연습용으로 가공된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안건번호 제2023-94403호~9440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4408호~94422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시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4423호~94434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1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홍지만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김민아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융육육육성',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487 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44 01호~9440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서 더빙 연습용으로 가공된 영상을 전송한 사안임.
 -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으니 2차적 저작물은 맞음. 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임. 유사 사례들이 많아져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시정권고 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모니터링 혹은 민원인이 신고한 것을 가지고 시정권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임. 이런 경우 과거에 우리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김준근 주임: 제2023-101회, 2분과에서 비슷한 안건인 더비 연습용 영상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 그 당시 의결 결과는 부결이었음.
- B 위원: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영상에 녹음을 하는데, 별도로 허락 받은 것 같지는 않음.
- A 위원: 원래 저작권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악보 같은 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카피본을 사서 해야되는 것이 맞음. 그래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가려면 경고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94401호~94402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D 위원: B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정족수 기준 가결 1, 부결 2로 안건번호 제2023-94401 호~94402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

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44 03호~9440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94403호~9440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4403호~944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44 08호~944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94408호~9442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 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4408호~944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4 423호~94434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 시된 불법복제물임.
 -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건번호 제2023-94423호~9443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4423호~944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4435호~9585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일방송, 만화/웹툰, 출판/어문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94435호('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는 2023. 07.1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판매중임.
 -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3-94573호('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2023.06.21. 공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70포인트에 판매중임.
 - ('시크린 인베이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95077호 ('시크린 인베이전')는 2023.06.21.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50포인

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94435호~9585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 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4435호~9585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3-94401호~94402호는 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94403호~94407호, 제2023-94408호~94422호, 제2023-94423호~94434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94435호~9585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식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식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25.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